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18.

고용노동부 장관

1 사업 개요

-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 지원

2 지원 대상 및 요건

1 지원 대상

- ① 특고·프리랜서: '19.12 ~ '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다만, 월 5일 이상의 노무 제공('19.12~'20.1월 중 10일) 또는 월 25만원 ('19.12~'20.1월 중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를 의미
 -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는 자
 - 직종 특성상 '19.12 ~ '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특고·프리랜서 예시 >

-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증빙서류:** ①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 또는 ②기타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② 영세 자영업자: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참고1)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는 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다만, 해당 기간 매출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에 준해서 지원

↳ **증빙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와 상시근로자수 증빙 자료 등(택1)

③ 무급휴직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20.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개별 근로자의 동의(또는 신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통상임금 70/100)을 지급받지 않고 무급으로 쉬고 있는 자

- ①「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②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 기준 미적용

↳ **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다만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2 자격 요건

<1> 소득 기준

- ①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②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③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나의 요건 충족 시 가능)
 - (가구소득) 주민등록표('20.5.7 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중위소득 150%는 홈페이지 또는 Q&A을 통해 확인 가능)
 - ↳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불필요
 - (연소득)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
 - ↳ 증빙서류: ①소득금액증명원, ②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 (연매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
 - ↳ 증빙서류: 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 재무재표, ④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2> 소득 감소 요건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또는 '19.12~20.1월, '19.3~4월 중 특정월)의 소득·매출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

구분	소득·매출수준	소득·매출감소 비율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이하	25% 이상 감소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5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50% 이상 감소

-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매출, 직전 기간인 '19.12~'20.1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인 '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 (예: '20.3~4월 평균소득 vs '19.12월, '20.3~4월 평균매출 vs '19년 월 평균매출)

- ↳ 특고·프리랜서 증빙서류: ①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또는 ②기타 소득 증명(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1)
- ↳ 영세 자영업자 증빙서류: ①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②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 ③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④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거래 내역 사본, ⑤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⑥세무대리인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택1)

- '20.3~5월 중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하는 경우

구분	소득수준	무급휴직일수
1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개인: 연 5천만원 이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
2구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개인: 연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

* 고용보험 가입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소득·매출 감소 요건 (25~50%)을 갖춘 경우 지원, 영세 자영업자 소득 감소 증빙자료와 동일

- ↳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③ 중복 수급 관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 안정 지원금의 경우 중복 수급 불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참고2),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다만, 기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원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신청 원칙

< 예 시 >	
✓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수급 → 지원 가능
✓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 안정 사업 등 참여 → 지원 가능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참여 → 차액 지원 예) 50만원 수급 시('20.6월 지급자도 포함) 동 사업으로 1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20.3~5) 지원 → 차액 지원 예) '20.3~4월 간 6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90만원 지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20.3~5) → 차액 지원 예) 3월·4월 간 총 8일 사용, 40만원 수급 시 동 사업으로 110만원 지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자 → 지원 불가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월 50만원 X 3개월분(총 150만원) 지원
 - 1차 100만원 2주내 지급, 2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참여자는 해당 사업 지급 완료 후 지급)
- '20.6.1~7.20.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원칙(5.25(월)부터 모의 확인 서비스 제공)
 - 6.12(금)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출생년도 끝자리	신청일
1,6	6월 1, 8일	2,7	6월 2, 9일
3,8	6월 3, 10일	4,9	6월 4, 11일
5,0	6월 5, 12일	모두 가능	6월 6, 7일

- '20.7.1~7.2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오프라인 접수 가능
 - * 자세한 접수처는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4

제출서류

① 신청인 기본 정보(공통제출,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협약서
-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재

② 기타 증빙 자료 (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 지원 자격, 소득 감소(무급휴직 일수) 요건 관련 증빙 서류

5

기타 참고 사항

- 신청인이 지원금 부지급 결정(SMS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 이내 우편·전자메일·팩스를 통해 이의신청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 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자 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 수급·부정 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과 제재부가금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1**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이 중, 불건전 터키탕업, 안마시술소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참고2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자치단체명	사업명
서울특별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부산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사업
	코로나19 피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사업
인천광역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특별지원금
광주광역시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원
	특수고용직 생계비 지원
대전광역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울산광역시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경기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기초자치단체별로 상이
충청북도	휴직근로자, 실직자 지원사업
충청남도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전라북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경상북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경상남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강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① 공통제출(온라인 신청시 전산 기재)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 포함)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③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② 특고·프리랜서

1.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①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등) 또는
 - ② 노무 제공 확인이 가능한 서류(용역계약서, 위(촉)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등 택1)
2. 소득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
 - ①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사업주 발급) 등) 또는
 -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내역서 등(택1)

③ 영세 자영업자

1. 소상공인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1)
 - ①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 ② 사업장등록증과 상시근로자수 증빙 서류
2. 연매출액 증빙자료(택1)
 -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불필요), ②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 ③ 세무대리인의 직인이 날인된 결산재무재표, ④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⑤ 그 외 입증 가능 서류(택1)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같음
3. 매출액 감소 여부 증빙이 가능한 서류(택1)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②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③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④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⑤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④ 무급휴직자

1. 사업주 확인 무급휴직확인서
2.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및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 및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 지원 대상 관련 >

1.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주민등록표(5.7 기준)상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20.3~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형제·자매는 제외)
 -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의 판정 기준과 비교함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월/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2인	4,488,000	150,025	147,928	151,927
3인	5,806,000	195,200	203,127	198,402
4인	7,124,000	237,652	254,909	242,715
5인	8,442,000	286,647	308,952	298,124
6인	9,760,000	326,561	349,099	343,406
7인	11,085,000	402,261	426,790	437,059
8인	12,410,000	437,059	462,265	471,545
9인	13,735,000	471,545	495,914	519,517
10인	15,060,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①가구원이 직장가입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②가구원이 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③가구원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혼합되어 구성: 혼합가입자 기준 중위소득 150%와 비교

- 사례: 부모님과 실제로는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라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는 가구원에 포함됨

2. (특고·프리랜서) '19.12월~'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는 것인지?

- 해당 기간 중 일부만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음을 입증하면 됨
 - 직종 특성상 '19.12~'20.1월에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 감소 기간의 전년 동월('19.3~4월) 또는 직전 기간('19.10~11월)에 노무제공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

3. '19.12~'20.1월에는 특고였는데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19.12~'20.1월에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 받을 수 있음

- 사례: '19.12~'20.1월에 학습지교사로 근무하였으나 '20.2월부터 다른 일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 가능

< 자격 요건 관련 >

1. 소득(매출액)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 '20.3~4월의 평균 소득(매출액)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매출액)을 비교하여 판단함
 - 비교 대상 기간은 ①'19년 월 평균 소득(매출액), ②'19.12~'20.1월 중 특정 월, ③'19.3~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사례: 직종 특성 상 매년 3~5월 사이에 소득이 주로 발생하여 전년 동월 ('19.3~4월)에 비해 소득은 감소하였지만, '19.12~'20.1월과 비교해서는 소득 감소가 크지 않은 경우 →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년 동월과 비교함

2. '20.3~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있는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무급휴직일수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을 합한 기준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됨
- 따라서 특정 달에 무급휴직일이 몰려 있는 경우라도 총 무급휴직일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음

<예시: 무급휴직일수에 따른 심사 결과>

구분	3월	4월	5월	요건충족	비고
무급휴직일수	4일	4일	4일	미충족	두 요건 모두 미충족
	6일	5일	5일	충족	각 월별 5일 이상
	23일	4일	4일	충족	총 30일 이상

* 신청인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전제

<기타 >

1. 외국인의 경우에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

-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함
 - * 단, 결혼이민자와 15세 이상 자녀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 다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라도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 *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과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무직휴급일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음

2. 신청은 한번만 하면 되는 것인지?

- 지원금은 한 번의 심사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기간 내 한 번만 신청하면 됨

서식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고·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특고·프리랜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휴대전화)		
	⑤근무사업장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사업장주소	⑧(사업장)전화번호		
	⑨근무기간			
	⑩직종			
	[] 보험설계사	[] 골프장캐디	[] 학습지교사	[] 건설기계종사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설치기사	[] 화물자동차운전자	[] 교육관련종사원	[] 교육관련종사원
	[] 운송관련종사원	[] 여가관광관련종사원	[] 판매관련종사원	[] 판매관련종사원
[] 문화공연관련종사원	[] 서비스관련종사원	[] 기타()	[] 기타()	
⑪계좌번호	/ () 은행			

신청 내용	⑫소득 요건	연(年)소득	`19년 총소득		원	
		※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구원만 작성(연소득 7천만원 초과시에만 작성)				
		[] 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모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배우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자(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녀(女)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⑬소득 감소 요건	소득감소기간	`20년 3월			원
		(필수입력)	`20년 4월			원
		비교대상기간 (택1)	`19년 월평균(19년 총소득÷12월)			원
`19년 3월			원			
`19년 4월			원			
`19년 12월			원			
	`20년 1월			원		
⑭유사 사업 참여 여부	※ 유사사업 참여여부 확인 필수(부정수급시 수령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사업 및 수령금액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자치단체)				
		신청여부	[] 예	[] 아니요		
		지급완료여부(신청한 경우 체크)	[] 예 / (수령액 원)	[] 아니요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원
		취업성공패키지	[] 예	[] 아니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예	[] 아니요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 예	[] 아니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예	[] 아니요				
기타 (사업명: , 기관명: , 수령금액: 원)						
⑮고용 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나요 [] 예 [] 아니요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영세자영업자)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휴대전화)
	⑤운영사업장명	⑥사업자등록번호
	⑦사업장주소	⑧(사업장)전화번호
	⑨근무기간	
	⑩직종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 그 밖에 업종(5인 미만)
	⑪계좌번호	/ (은행)

신청 내용	⑫소득 요건	택 1 연(年)소득	'19년 총소득	원	
		1 연(年)매출	'19년 총매출	원	
		※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가구원만 작성(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7억원 초과시에만 작성)			
		[] 부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모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배우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자(子)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 녀(女)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개인정보제공동의	[] 동의	[] 미동의	
	⑬소득 감소 요건	소득감소기간	'20년 3월	원	
(필수입력)		'20년 4월	원		
비교대상기간 (택1)		'19년 월평균('19년 총소득÷12월)	원		
		'19년 3월	원		
		'19년 4월	원		
		'19년 12월	원		
'20년 1월	원				
⑭유사 사업 참여 여부	※ 유사사업 참여여부 확인 필수(부정수급시 수령액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참여사업 및 수령금액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자치단체)			
		신청여부	[] 예	[] 아니요	
		지급완료여부(신청한 경우 체크)	[] 예 / (수령액 원)	[] 아니요	
		긴급복지지원(보건복지부)	원		
		취업성공패키지	[] 예	[] 아니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예	[] 아니요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 예	[] 아니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예	[] 아니요			
기타 (사업명: , 기관명: , 수령금액: 원)					
⑮고용 서비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의사가 있나요 [] 예 [] 아니요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제공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업무지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2.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모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자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담당 직원
확인사항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아래 본인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 ① 아래 협약인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 ②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지원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월 일

협약인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서식10**소득감소확인서(통장거래내역 제출시 작성)****① 소득감소기간 : 3월, 4월 소득액**

연번	일 자	내 역	수입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② 비교대상기간 : []월 소득액

연번	일 자	내 역	수입액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